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6. 2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5. 1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 5. 19.
- 다. 상정일자 : 제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 6.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 영 상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마포구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영유아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당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보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 위원 :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시민단체대표, 마포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종사자중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체에서 임면
하고 기타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함.
 -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위탁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정기검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위탁운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수탁자가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55호) 제2조 내지 제9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0.8.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제8조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법령에 근거를 둔 보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보육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 하도록 하였음.

안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하도록 하였음.

안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함과 동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제16조에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동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지" 는 "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으로 하여 구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제3조 제1호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는 이하 서울특별시 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수탁자 선정(재위탁포함)"은 용어를 정정하여"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포함)"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제12조제2항중 "위탁운영자"는 안제10조제2항에서 위탁운영자는 수탁자로 약칭을 사용키로 함에 따라 "수탁자"로 하고

안제13조 중 "1.보육시설운영위탁신청서"는 용어를 정정하여"1.보육 시설위탁운영신청서"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는 1년에 몇회인가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1년에 2회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구립시설 보유 위탁기간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3년임.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수탁자 결정 이후 3년 지나고 명의가
바편적이 있는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일부있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우리구 관내 구립보유시설은 몇 개소 인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27개소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사립시설은 몇 개소인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51개소이며,가정보육시설은 58개소임.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구립시설을 계속늘려 갈 수 있는가?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영유아보육시설의 열악함으로 수요를
충당못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임.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발전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임.
- 답변요지(최승범 생활복지국장) : 수요판단을 면밀히하여 중장기
계획에 예산반영을 하겠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운영을 어떻게 하였나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서울시지침,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영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4급 공무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을 경우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석일 때 임기는 ?

- 답변요지(최승범 생활복지국장) : 호선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승계되지 않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숫자 명시는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명시는 없음.
- 답변요지(최승범 생활복지국장) : 전체위원 중 적정수준에서 배정함.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어린이집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소방훈련이 전혀 없다.
행정관서에서 1년에 몇번씩 실시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바람.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장) : 보육시설의 감독여부는 ?
- 답변요지(황영상 사회복지과장) : 구립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민간은 연회 감독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6. 2. 이매숙의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안 제2조 제2항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 의원 .

- 안 제3조 제 1호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수탁자선정"(재위탁포함)"은 "위탁운영자선정(재위탁포함)"으로 한다
- 안 제12조 제2항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한다.
- 안 제13조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6. 2.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안 제2조 제2항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한다) 의원 .

안 제3조 제 1호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주택지선정(자유탁포함)"은 "위탁운영지선정(자유탁포함)"
으로 한다

안 제2조 제2항중 "위탁운영자"를 "주택자로 한다.

안 제13조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

안 제3조 제 1호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동조 제5호중 "수탁자선정(자유탁포함)"은 "위탁운영자선정(자유탁포함)"
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한다.

안 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p> <p>1. - 5. (생략)</p> <p>6.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u></p> <p>③ - ④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u>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 수립</u></p> <p>2. - 4. (생략)</p> <p>5. <u>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이하"구립보육시설"이라 한다)수탁자 선정(재위탁포함) 및 위탁취소에 관한사항</u></p> <p>6. (생략)</p> <p>제12조(위탁기간)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u></p> <p>제13조(신청서류)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보육시설운영위탁신청서</u></p> <p>2. - 6. (생략)</p>	<p>제2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원안과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p> <p>1. - 5. (원안과같음)</p> <p>6.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u></p> <p>③ - ④ (원안과같음)</p> <p>제3조(위원회의 기능) _____ ----- _____</p> <p>1. _____ _____</p> <p>2. - 4. (원안과같음)</p> <p>5. _____ _____ <u>위탁운영자</u></p> <p><u>선경(재위탁포함)</u> _____</p> <p>6. (원안과같음)</p> <p>제12조(위탁기간) ① (원안과같음)</p> <p>② _____ <u>수탁자에</u> _____ _____ _____ _____</p> <p>제13조(신청서류) _____ _____ _____</p> <p>1. <u>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u></p> <p>2. - 6. (원안과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마포구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영유아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보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시설 대표, 시민단체 대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나.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라. 종사자중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마.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

-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함.

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사. 위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아. 위탁운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수탁자가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근거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등
- 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2조 내지 제9조
-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00.8.18 보건복지부령 제169호) 제8조 등

4.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5. 예산조치 : 2001년도 예산에 마포구보육위원회 참석수당 2,100,000원 편성되어 있음.(50,000원×14명×3회=2,100,000원)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1.4.6 ~4.26)결과, “따로붙임” 참조
- 나.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5.11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 1부.
- 라.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5. 보육시설 대표
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행 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보육시설(이하 “구립보육시설”이라 한다) 수탁자 선정(재위탁 포함)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000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위탁계약 등) ①구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자 모집) ①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류)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운영위탁 신청서
2. 위탁신청업체 현황
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4.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14조(종사자 임면)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하되, 임면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의 자격)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구청장은 예산범위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에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위·수탁 약정서에 따른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p>마포구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김석순)</p>	<p>가. 마포구보육위원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교체는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p> <p>나.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 - 위탁자 선정시 제1순위 : 법인, 제2순위 : 단체, 제3순위 : 개인으로 규정하고, -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p> <p>다. 위탁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 위탁서류로 대 신하되, 변경된 부분만 보 완하도록 규정</p>	<p>○ 반영되어 있음 -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 임할 수 있음(안 제4조)</p> <p>○ 미반영 - 위탁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결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보 육시설 종사자 대표, 관계공 무원,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마포구보육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우선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안 제2조 및 제3조) -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수탁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안 제10조제2항)</p> <p>○ 미반영 - 위탁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운영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규정할 사 항임.</p>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p>마포구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김석순)</p>	<p>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과 관련하여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로 하고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시설장은 1회 3년, 보육교사는 1회 2년 정년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정----</p>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65210-1495 (2001.4.27)호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정년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라는 통보가 있고 - 또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하여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근거규정을 도입하기까지는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정년제 폐지방침을 통보 받음. - 따라서 보육조례(안) 제16조(종사자의 정년)의 규정 삭제 및 부칙 제4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삭제함.